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 기관 정비 등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60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위해성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 마련	3
2.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 기관 정비	6
※ 참고자료	10
1.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체계	10

I. 제안경위

2024년 9월 6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필요시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 수렴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이 고도하게 요구되는 위해성 평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현행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권한의 위임 대상이 되는 소속 기관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으나, 소속

기관의 명칭은 대통령령(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법률에는 소속 기관의 명칭을 나열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관명 변경 시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 행정적 비효율을 보완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근거를 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을 법률에 따른 권한의 업무 위탁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해성 평가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나. 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환경부 소속 기관명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장’으로 수정함(안 제48조제1항).

다. 법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위해성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 마련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시에 관련 분야 전문가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위해성평가) ①·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24조(위해성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법 제24조¹⁾에서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1) 법 제24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체계

화학물질 중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제1호) 또는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제2호)에 대해서는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위해성평가 실적 및 추진 계획]

(단위: 건)

구분	실 적							계 획
	소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77	1	13	6	21	21	15	14
상세위해성평가	35	1	13	6	5	6	4	4
초기위해성평가	42	—	—	—	16	15	11	10

자료: 환경부

위해성평가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용형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의 피해 가능성 등을 보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위법령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²⁾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3호) 제9조(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보고서는 규칙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별표 7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규칙 제51조에 따라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뿐만 아니라 위해성평가 과정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해 위해성평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³⁾, 「해상교통안전법」⁴⁾ 등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 ③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서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 기관 정비

개정안은 ①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나열하지 아니하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 포괄하여 명시하고, ③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u>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 <u>소속 기관의 장에</u> <u>게</u> -----.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u>한국환경공단</u>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 ----- <u>한국환경공단, 「환경</u> <u>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u> <u>보전원</u> 및-----.

첫째, 현행법 제48조제1항5)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소속기관의 명칭은 시행령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에서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권한의 위임 대상인 소속기관의 명칭을 각각 나열하고 있어 소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률과 하위법령을 함께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7)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속기관의 명칭을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등과 같이 각각 나열하는 대신, ‘소속 기관의 장’으로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관 명칭 변경 시의 행정상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환경보건법」 8), 「철도안전법」 9) 등 다수의 법률에서 주무

5) 법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둔다.

②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를 둔다.

③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④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 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둔다.

7)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의 명칭을 국립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하고자 추진 중임.

8) 「환경보건법」 제30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철도안전법」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

셋째, 현행법 제48조제2항¹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¹¹⁾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¹²⁾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화학물질관리법」¹³⁾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개정안은 한국환경보전원을 이 법에 따른 위탁 대상 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1978년 「환경보전법」¹⁴⁾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201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운영되어 왔던 환경보전협회가 2022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¹⁵⁾의 개정으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0) **법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3)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14) 「**환경보전법**」 (법률 제3078호., 1977.12.31., 제정) 제61조(환경보전협회)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계몽사업등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1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국환경보전원 연혁 및 주요 기능]

연혁	(‘68.12.) 「공해방지협회」 설립 (당시 「공해방지법」 제17조) (‘78.10.) 「환경보전협회」 설립 (당시 「환경보전법」 제61조) (‘83.09.) 환경기술인 교육훈련기관 지정 (당시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08.02.) 환경교육 권한위탁기관 지정 (당시 「환경교육진흥법」 제18조) (‘12.10.)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 최초 지정 (당시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17.02.)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지정 (‘23.06.) 개정 설립근거법 시행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 기관 명칭 변경, 제단법인격 전환, 정부 출연·보조근거 신설, 사업범위 명문화 등 (‘23.12.) 「한국환경보전원」 설립(「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주요 기능	○ 환경기술인 등 법정 교육 및 학교·사회 환경교육 - 각 환경관련 개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 법정교육(연평균 약 10만명) - 「환경교육법」 제24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학생·일반시민 환경교육 ○ 수질 환경개선 및 수변생태계·자연환경 복원 -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유지관리(약 72.1km²/2,186만평)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현업축사 매입·생태복원과 ASF 차단 광역울타리 관리 ○ 환경보전·기후변화 관련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사업 - 환경보전·보건 등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실현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 추진 -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해외전시회 한국관(수출컨소시엄) 구성·운영 ○ 측정대행계약관리 및 수질·유량·석면 등 조사·모니터링 사업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 계약 관리 - 한강수계 소유역 하천모니터링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운영 -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질분석, 사전석면조사 등 환경 측정·분석 사업 운영 ○ 중소·환경기업 지원 - 사업장 기술지도 및 환경법률상담 서비스, 설명회·세미나 개최 등

자료: 환경부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1.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체계(자료: 환경부)

